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25
----------	-----------

제출일자	2013. 4. 12.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군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 거창푸드에 대한 품질기준 제시, 거창푸드 인증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며,
- 대내외적으로 거창 농식품의 품질을 차별화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거창푸드 : 군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함.

나.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제14조)

- (1) 거창푸드산업 육성계획 수립, 푸드인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둠.
- (2)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함.

다. 거창푸드 인증기준을 정함(안 제15조 ~ 제22조)

- (1) 품질표준화 및 공동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 수립 시행하여야 함.
- (2)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및 인증상품 사용권을 부여 함.

라.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관하여 정함(안 제23조 ~ 제27조)

- (1) 생산 : 소량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 농업인이 참여
- (2) 가공 : 같은 업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
- (3) 유통 : 같은 업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
- (4) 소비 : 학교급식, 청소년시설,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우선 소비
- (5) 거창푸드 소비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28조 ~ 제30조)

- 거창푸드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푸드종합센터를 설치·운영 함.

바. 거창푸드산업 육성·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정함(안 제31조 ~ 제33조)

○ 거창푸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제6조

(3)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 제6조

(4) 「상표법」 제95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1,480백만원(2011 ~ 2013년 예산 기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10. 17 ~ 11. 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 농촌 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푸드”(Geochang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군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유통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이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읍·면의 지역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8. “참여주체”란 거창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를 말한다.
9. “거창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거창푸드의 재배방법, 품질 및 유통단계가 군이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군수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10. “거창푸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인증을 받은 거창푸드를 선순환적으로 소비하는 자를 말한다.
11.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장”이란 거창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국내외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형식으로 협력하는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참여주체의 책임) ① 군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인증을 받은 거창푸드(이하 “인증식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군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식품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거창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창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관한 사항

3. 거창푸드의 적정한 자금목표
4.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창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거창푸드 관련 지원사업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증 및 인증상표 사용권 부여에 대한 최종 심의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 : 군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12명 이내
 -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명 이내
 - 나. 거창푸드 관련 사회단체 2명 이내
 - 다.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담당 과장 또는 영양사) 2명 이내
 - 라. 농업인 단체 2명 이내
 - 마. 소비자 단체 2명 이내
 - 바. 거창푸드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대표 2명 이내
 - 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컨설팅업체 종사 2명 이내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거창푸드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거창푸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거창푸드 인증

제15조(인증기준) ① 군수는 인증 품질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 거창푸드의 품질을 차별화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해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식품의 생산·유통·판매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대상)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을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인증에 관한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인증 및 사용권 부여) ①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및 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증표시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식품의 명칭·무게·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 이름 등과 인증마크 등 표기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 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인증의 취소)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 관련 기관 및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거창푸드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거창푸드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거창푸드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증에 대한 심사·평가
2.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6.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용권 사후관리 및 홍보) 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인 인증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상표 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생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제23조(생산) ① 거창푸드 농산물 생산은 소량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성과 더불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식품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거창푸드산업 육성과 건전한 생산자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가공) ① 거창푸드 가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관·학·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유통) ① 거창푸드 유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거창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소비) ① 거창푸드는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의 학교급식,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사회적 배려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우선 소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식품을 우선 사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자 지정 및 마일리지 제공) ① 군수는 거창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 그 밖에 거창푸드를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

②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거창푸드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

제28조(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 ①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시·판매장 : 거창푸드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2. 집하·선별·저장 : 거창푸드 농산물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 및 저장

②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운영하고 거창푸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제2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유통전문인력 확보,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장 거창푸드산업 육성·협력체계 구축

제31조(체험농장·농업인 직거래장터) ① 군수는 군의 유희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거창푸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주민과 농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해진 날에 거창푸드 등을 판매하는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수 있다.

제32조(거창푸드정보시스템 구축) ① 군수는 참여주체에게 거창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자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과정과 인증지원센터, 유통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등 거창푸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변경한 경우에는 그 정보가 거창푸드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푸드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군수는 특정 거창푸드가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조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거창푸드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거창푸드 사용 마일리지 부여
- 거창푸드산업 육성 조례안
 - 제27조(사용자 지정 및 마일리지 제공) ③ 군수는 사용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거창푸드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9조(위탁운영) ⑥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세출	도비		570					570
	군비		710	200	150	100	50	1,210
	소계(a)		1,280	200	150	100	50	1,780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1,280	200	150	100	50	1,780

3. 관련 의견

- 거창푸드산업 육성과 시행초기 참여유도를 위한 마일리지 제공
- 농산물 2단계 이하 유통단계 확립에 위한 거창푸드종합센터 수지분석에 따른 운영비 지원 필요(4차년도부터 흑자전환)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만